

울 산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17274 배당이의

원 고

1. 파산자 A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B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파산자 주식회사 C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4. 주식회사 D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5. 파산자 주식회사 E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6. 주식회사 F은행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표이사 신OO
7. 파산자 G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8. 파산자 H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9. 주식회사 I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I은행의 파산관재인 예
금보험공사

원고 1, 2, 3, 4, 5, 7, 8, 9의 대표자 사장 김OO

위 원고들 주소 서울 중구 청계천로 (다동, 예금보험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손한규

피 고

1. 주식회사 J

울산 남구 둔질로 34 (신정동)

대표이사 이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2. 회생회사 K 주식회사의 관리인 임OO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K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OO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원천동, 미송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인진, 이승호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30.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13타기149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한 배당액 315,518,647원을 0원으로, 피고 회생회사 K 주식회사의 관리인 L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K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M에 대한 배당액 2,852,628,34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 A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은행, 주식회사 C은행, 주식회사 D은행(상호 변경 전 : 주식회사 부산E은행), 주식회사 E은행, 주식회사 F은행, G은행 주식회사, H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은행(상호 변경 전 : 주식회사 호남E은행)에 대한 '2011 카합534호'에 관한 배당액 2,371,251,816원을, 원고 파산자 A은행 주식회사의 파

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393,809,13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D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40,340,049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E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914,771,498원, 원고 주식회사 F은행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G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H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I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I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160,085,01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주식회사 F은행 및 파산전 나머지 원고회사들(이하 위 원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파산관계는 생략하기로 한다)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굴화(장검)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2011. 7. 22.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체비지에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그러자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2. 4. 27.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1771호로 위 2011카합534호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13,353,544,186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2. 4. 30. 울산지방법원 2012카기409호로 위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3) 원고들은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N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N은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들측에 보조참가하였다), 2013. 9. 5.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5,539,398,811원¹⁾ 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원고들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5,539,398,811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3나8410호 판결).

(4)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위 2011카합534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2013. 9. 30.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763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위 2011가합4236호 판결의 취지에 따라 5,539,398,811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5) 원고들은 위 2011가합423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7.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696호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한민국

1) 원고별 인용금액 : 원고 A은행 주식회사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B은행 393,809,130원, 원고 주식회사 C은행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D은행 640,340,049원, 원고 주식회사 E은행 914,771,498원, 원고 주식회사 F은행 686,078,624원, 원고 G은행 주식회사 686,078,624원, 원고 H은행 주식회사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I은행 160,085,012원

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3. 10. 1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이라고만 한다)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J은 N의 대표이사였던 장석만을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나8836) 계속 중이던 2009. 1. 5. 회부된 조정기일에서 N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N이 위 피고에게 9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석만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피고 J은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9. 17.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 11084호로 N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3. 9. 25.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회생회사 K 주식회사의 관리인 L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K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M(이하 '피고 K'이라고만 한다)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K은 N을 상대로, 피고 K이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으로부터 양수한 N에 대한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5. 3.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5028호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N이 항소하였으나, 2013. 1. 31. 서울고등법원 2012나42644호로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K은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6. 21.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로 N의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 해제로 인한 금전반환청구권 내지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3. 6. 26. 제3채무자인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K은 재차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9. 24.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 11303호로 N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3. 9. 3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울산지방법원 2013타기1496호 배당절차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울산지방법원 2013타기1496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2. 20. 위 2011카합534호 가압류채권자로서 원고들에게 2,371,251,816원, 피고 J에게 315,518,647원, 피고 K에게 2,852,628,348원 등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기일에 참석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 5, 6, 7, 9호증, 을가4호증의 1, 2, 을가6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 J이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및 피고 K이 신청한 같은 법원 2013타채113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채무자를 주식회사 N,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존재하지 않는 N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명령이므로 당연히무효이고,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배당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두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35조), 한편, 채권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 J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K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3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N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N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피고 J에 대하여 315,518,647원을, 피고 K에 대하여 2,852,628,348원을 각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1)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여 그에 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하므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315,518,647원을 0원으로,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2,852,628,34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삭제를 명하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3,168,146,995원(=315,518,647원 + 2,852,628,348원)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하되,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들이 경정을 구하는 '2011카합534호' 배당액 부분은 원고별로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의 이 부분 배당은 ①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6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같은 법원 2011카합534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② 원고 주식회사 F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파산전 위 원고회사들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 그 파산관재인인 이 사건 위 원고들에 대한 배당임을 아울러 밝혀 둔다.

<경정하는 배당액>

원고	경정하는 배당액
원고 파산자 A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93,809,13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D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640,340,049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E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914,771,498원
원고 주식회사 F은행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G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H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I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I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160,085,012원

(3) 경정을 명하지 않는 부분

한편, 원고들에 대하여 경정을 명하는 배당액의 합계는 5,539,398,809원(= 686,078,624원 + 393,809,130원 + 686,078,624원 + 640,340,049원 + 914,771,498원 + 686,078,624원 + 686,078,624원 + 686,078,624원 + 160,085,012원)으로, 각 삭제를 명하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과 원고들에 대한 종전 배당액을 더한 금액인 5,539,398,811원(=315,518,647원 + 2,852,628,348원 + 2,371,251,816원)과는 2원의 차이가 나지만, 이는 원 미만 버림의 계산 방식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경정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의 위법에 관한 주장

피고 K은 원고 주식회사 F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2011. 6. 30.경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N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하였고, 따라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은 원고들의 소송요건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은 그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어떠한 사유로든 알았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그 기판력이 미치는바(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위 2011가합4236호 사건에서 채무자에 해당하는 N이 원고들측에 보조참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N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N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 K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 K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주장

피고 K은 굴화(장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피고 K의 압류의 효력과는 무관한 내용으로서, 위 피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이상욱

판사 선민정